

온라인불량행위에 관한 이해: 처리와 대응

이 경 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온라인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온라인 불량행위이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량행위는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들은 온라인 불량행위가 글, 문자와 이미지로 되어있어서 신체적 손상을 동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컴퓨터 접속을 중단하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고 믿는다. 또한 나이 어린 이용자들은 단순히 재미로만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온라인 불량행위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가 아니라 인터넷이용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온라인 불량행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의 목적은 온라인불량행위의 개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온라인 불량행위는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온라인 불량행위는 단순한 말장난 차원부터 엄연한 범죄행위까지 포함한다. 온라인 불량행위는 내용면과 행위자 유형 면에서 분류되었다. 내용측면에서 온라인 희롱, 음란물전시, 사이버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 등이고 행위자 유형에서 볼 때 이상적 목적, 도구적 목적과, 의도적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온라인 불량행위에 대한 조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심의제, 이용윤리교육과 기술규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조치들은 컴퓨터기술과 맞물려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제재조치를 경험한 이용자들이 제재의 본질을 이해하기 보다 또 다른 방식의 불량행위를 저지른다. 따라서 온라인 불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어진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의 현실화, 온라인 콘텐츠의 윤리의식 강화와, 사이버지역의 자각의식 함양 등의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주요어: 온라인 불량행위, 심의, 기술 규제, 이용윤리

I. 서 론

사이버공간 이용자가 현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설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공간 이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네티즌 10명 중 8명이 우리 나라 사이버문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네티즌들의 대부분이 인터넷 상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였다는 한 조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입증되고 있다(이순형, 2000). 사이버공간 이용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성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인터넷119'(구 불건전정보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심의된 건수 가운데 26%는 욕설과 같은 불량 내용들이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이미지와 문자로 된 불건전 내용은 사이버공간이 갖는 익명성, 개방성과 비대면성 등으로 인해 더욱 무분별하게 확산될 소지가 있으며, 그 무분별성의 범위가 이용자연령의 측면에서 보다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이 저지르는 불량행위는 아동발달전문가나 교육자들 사이에서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불건전정보가 지역적으로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상의 연령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그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사이버엔젤스, 2001). 게다가 미숙한 온라인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스토킹등의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FBI, 2000). 이러한 상황은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위태로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전반에 도덕적 기반을 와해하고 불신을 조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량행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나이 어린 이용자들은 컴퓨터 화면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폭력이 아닌 단순한 재미로만 인정하는 반면, 인터넷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물리적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온라인 접속을 두려워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과 사회생활까지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본 글의 목적은 온라인상의 불량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는데 있다. 온라인상의 불량행위 처리와 관련하여 그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이하, 피해신고센터로 약함)에 신고 접수된 현황을 소개하고 접수된 사례를 내용 측면과 행위자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피해사례 처리과정에서 발견되는 어려움을 정책적, 교육적, 그리고 기술 규제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불량행위 방지에 필요한 향후 대책을 제시해 본다.

II. 온라인 불량행위의 개념

온라인 불량행위의 현황

온라인 불량행위 피해 유형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피해신고센터(현재,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에 접수된 신고들인데 시기적으로 2000년 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이다. 분석에 이용된 사례는 총 1,463여건이다. 신고시에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의 성별이나 연령을 분명히 수치화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불량행위의 심각성을

표 1. 내용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기간 \ 유형	성희롱	음란물전시	스토킹	명예훼손	기타	총계
2000.5월~12월	171	80	42	173	143	537
2001.1월-11월	206	161	20	193	274	854

확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타 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생략하였다. 본 글에서는 피해내용유형과 행위자유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하였다.

피해유형에 사용된 명칭은 성희롱, 음란물 전시, 스톱킹, 명예훼손, 기타등 다섯 가지인데, 이 개념은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명명된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과 신고자의 결정에 따라 명명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각자가 가진 개념의 정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해 놓았다.

표 1은 내용별 분류에 따른 신고 현황이다.

불량행위의 유형별 정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희롱

성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대학 여학생은 가슴이 크고 다른 ***도 크다,’ ‘***는 성감대가 ***하다’ 등이 대표적인데, 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형태로는 음란 CD제공 및 선전, 음란광고사이트 선전 등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형태인데, 클릭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이 나타나는 사례다. 기타의 예로, 성적인 메시지로 ‘나 뽕하게 해줄 남자,’ ‘섹스 파트너 구함,’ ‘애인구함’ 등의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3자로부터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자는 이러한 내용의 글을 게시판 등에 올리면서 특정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등을 함께 공개하

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로부터 무수한 전화성폭력을 받게 된다.

희롱의 다른 방식으로는 성적인 대화요청이 있다. 희롱 중에는 성과 관련된 음란한 대화를 하여 이용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이에는 성적행위에 대한 대화(예를 들면 속옷 젖었니? 또는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포함한 대화등)를 포함한다. 최근에는 화상채팅의 기술을 동원하여 서로 옷을 벗어가며 음란적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음란물 전시

음란물 전시라 함은 온라인 상에서 음란한 글·문자 또는 음향·영상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주요 이용수단은 이메일, 음란물 사이트, 음란게시판 등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서나 영상(CD 비디오)을 음란 스팸메일로 발송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와, 건전한 사이트를 견학하고 싶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음란물 사이트에 연동되거나 아니면 음란 게시판등에 링크되도록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많이 찾는, 소위 권장 사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사이트의 유사한 URL 또는 이름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음란물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다. 음란 스팸메일 수신율의 증가도 이에 속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는 사람의 메일계정

을 통해 메일이 발송되는 경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혹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대화를 요청하거나 음란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괴롭히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자들은 행위지 추적이 어려운 장소를 택하여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추적할 수 없어 쉽게 좌절하게 된다.

또한 특정가해자는 괴롭히고자 하는 상대방의 신원을 피해자의 주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고의로 그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한다. 가해자들의 스토키 행위는 하나의 통신 통로만을 이용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할 때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게 기술 조작을 해 놓는 것은 기본이다. 스토키를 당하는 피해자는 알 수 없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다. 이 경우 일상적인 대인관계와 사회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뿐 아니라 상당한 대인 공포증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개인신상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의 신상정보는 문자 혹은 영상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사진이나 게시된 글위에 문자로 성적으로 저속한 내용을 수록하여 개인을 알만한 장소(개인의 학교 공개 게시판, 학급카페, 직장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학교나 학급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특정 학생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올려놓은 경우가 많다. 신고한 학생은 자기네 반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나 학급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누군가가 들어와 본인과 관련된 허위메시지를 게시해 놓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피해학생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 싫다고 하소연한다.

명예훼손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명예훼손의 처벌 내용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것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명예훼손의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종합해 볼 때, 온라인불량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불량행위가 게시판, 대화방과 이메일등으로 문자, 글, 그림과 영상으로 표현된다. 둘째, 불량행위에 대한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다. 그래서 피해처리가 용이하지 않다. 셋째, 불량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게시가 가능하다. 넷째, 불량행위는 그 행위자나 행위지를 찾기 어렵다. 설사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다섯째,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의로 행해지는 불량행위가 있는가 하면,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불량행위가 있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후자는 주로 현실생활을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불량행위다.

컴퓨터 이용목적에 따른 행위 유형

온라인 불량행위의 행위 유형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이용목적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i) 이상적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 ii)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자와, iii) 도구적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자 등이다.

이상적 목적에 따른 행위 유형

컴퓨터를 이상적 목적으로 이용하다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다. 이들은 사이버공간에서는 어떤 정보든 공유할 수 있다는 이상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사진, 이메일 주소, 집주소, 직장이름, 휴대폰번호등)를 인터넷의 공개게시판에 공개하는 일을 쉽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놓은 이용자는 이로 말미암아 하루에 수십 통의 성적으로 저속한 전화를 받거나 자기가 올려놓은 글에 심각한 인격손상의 리플이 달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리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다시 올려놓기도 하지만, 이는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신고자는 단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의견을 교환하고 싶었다고 하소연한다. 여기서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이용자들은 인터넷공간에 다양한 표현 방식과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듯이 보인다.

의도적 목적에 따른 행위 유형

의도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량행위를 저지른다. 이때 경험하는 피해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현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재정적 불만이나 어려움을 온라인 만남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인

터넷에 접속을 한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성간의 건전한 만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과 오프라인 상에서 만남을 유도한다. 사실 온라인 상에서 만남을 주도한 이 여성은 처음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여 만남을 가진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여성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물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신체적 손상까지 당하였다고 후에 고백한다. 하지만 신고자는 사회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고자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인 매춘이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신고를 한 여성은 정신적·신체적 이중의 피해 이외에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엄청난 좌절에 빠진다. 주요 피해자는 여성과 미성년자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캐릭터인 아바타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이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바타 옷을 사주실 분, 연락 바람’이라는 등의 문구를 게시판에 띄운다. 그리고 상대방을 오프라인상에서 만나 원조교제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들이 가진 특징은 온라인 상의 행위가 비밀보장이 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진 이용자는 온라인상에서 만남을 가진 상대방을 오프라인상에서 만남을 가져 비밀스럽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도구적 목적에 따른 행위 유형

도구적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자는 상대방을 괴롭히는데 컴퓨터의 위력을 악용한다. 인터넷을 도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량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성간의 교제를

거절당한 사람들이 거절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공개 게시판을 이용한다. 이때 제3자들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공개한다. 이때 가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생성기를 이용하여 허위 아이디를 만들어내어 불량행위를 저지른다. 또한 PC방과 같은 장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교우관계나 대인관계에 불만을 가진 개인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장소 (학과게시판, 또는 학급게시판)에 그 특정인이 공개하기 원치 않는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다. 신고자는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불량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아니면 상대방이 전혀 알 수 없는 장소에 마치 상대방이 글을 올려놓은 것처럼 꾸며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성적으로 저속한 만남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문구는 성적 파트너 구함 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함께 공개게시판에 올려놓는다.

온라인불량행위의 개념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도하면서 발견한 주요한 사실은 온라인불량행위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사용되어왔다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초기에는 온라인 불량행위의 개념이 온라인을 매개로 한 불량행위와 온라인상의 불량행위와 구별 없이 혼동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대표적인 예로 사이버성폭력의 경우가 그러하다(이경화, 2002). 사이버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만 발생하는 폭력으로서 오프라인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성폭력과 구분된다.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성폭력은 온라인 상에서는 이용자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프라인상에서 만남을

갖는다.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단순 성폭력으로 명명되어진다. 이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에 대한 처리기관이나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등이 피해발생장소가 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을 일차적으로 가져오고 신체적 손상이 부수적이다. 반면, 온라인공간의 게시판, 대화방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유혹한 후 오프라인상에서 성폭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신체적 손상이 일차적이고 정신적 손상이 동반된다.

III. 불량행위의 처리 및 한계

온라인상의 불량행위에 대한 처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심의제를 이용하여 가해아이디에 대한 조치가 있다. 둘째, 이용윤리교육을 이용한 네티켓실천이 있다. 셋째, 기술규제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심의를 이용한 처리 및 그의 한계

온라인상의 불량행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의 경우와는 달리 '심의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사법처분의 전단계로 피해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불량행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방식은 '내용삭제' 요청일 것이다. 불량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의 처리에 만족하지 않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의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보다 엄격한 방식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심의제이다. 심의

표 2. 처리에 따른 분류

처리유형 기간	내용삭제	심의	타기관 안내	자체조사	일반 상담	합계
2000.5월-12월	0	55	112	62	308	537
2001.1월-10월	58	67	345	47	337	854

에 따른 ‘시정요구’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표 2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자들의 신고처리 가운데 내용삭제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심의결정에 따른 아이디 제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이용시 불편을 경험하면 피해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 해 버린다. 타기관 안내 숫자가 많음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여진다. 셋째,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의 피해정도를 객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주관적 결정에 따라 조치를 원한다. 일반상담으로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용을 게시한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사표현이라 주장하는 반면 신고자들은 자신의 인격을 모독한 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신고자A가 자신의 사진을 공개게시판에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이용자B가 이 게시판에 들어와 ‘못생긴 주제에 남자를 유혹하다나라는 등의 리플을 달아놓은 경우, 사진을 올린 A는 이를 목격한 후 신고를 하거나 사과를 요청하는 답글을 게재한다. 이때 대부분 신고자A는 흥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일단 신고를 해버리고는 어떤 특단의 구제조치를 요구한다. 온라인 불량행위의 증거자료가 인터넷상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피해자는 증거자료의 선 삭제후 신고 등 구제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인터넷상에서 대응하다가 사전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어버린다.

‘심의조치’는 컴퓨터 기술과 부딪쳐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심의 조치의 본질적 의도는 불량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서 불량행위를 저지하는데 있는 바, 이러한 의도를 가진 심의조치로는 해당정보의 ‘내용삭제’와 ‘이용정지’와 ‘이용해지’ 등이 있으나 이 기능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인정되고 있는 규칙과 잘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 이용자 아이디에 대한 이용정지 등 시정요구는 인터넷 불량이용자들로 하여금 용이하게 재범의 기회를 갖게 만들어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가 여러 곳을 경유하여 링크를 걸어두는 경우는 그 출처를 찾아내기 어렵다. 더욱이 ‘내용퍼오기’나 ‘p2p 전송’ 등의 컴퓨터 기술은 해당된 내용의 삭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바, 이러한 기술적 조작 때문에 심의 기능은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 심각한 기술적 조작은 불량이용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아이디를 만들어 활용하는 경우이다. 나아가 이들은 남의 아이디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해킹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얻어내기도 한다. 게다가 제재를 당한 이용자는 규제에 대한 반발심으로 기술적 조작을 악용하여 불량행위를 더욱 가속화할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조작은 심의조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바, 심의 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잠재 기술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심의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또 다른 경우로는 해외사이트를 경유하여 발생한 피해가 이에 해당된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 게시판에 성적으로 저속한 그림이나 문자메시지나 게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내 심의제도로는 그 처리가 어렵다. 해당사이트 운영자들은 자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내용삭제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게다가 심의를 전담하는 기관도 국내법망을 넘어서 피해로 단정하여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고 중단해 버린다.

게다가 사이버범죄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CDT(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에서 행해진 세미나에서 하버드 대학 연구원인 에델만은 6주에 걸쳐 3000만개가 넘는 웹사이트 주소를 분석한 결과 ‘com, net, org’로 끝나는 웹사이트 주소의 85% 이상이 실제로는 컴퓨터 리소스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버추얼 호스팅(virtual hosting)으로 불리는 기술을 통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디지털 타임스 2002년 2월 24일). 이 결과가 주는 의미는 범죄의 근원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온라인 불량행위를 처리하는데 심의제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안도 있다. 온라인불량행위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규제 기능인 심의 기능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방식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주는 법률적 조치조차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인터넷상에 게시된 내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설사 해당 내용이 법률 조치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은 이를 처리하는데

법률 조치에 의존하기를 주저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법률조치보다 간편하게 상대방과의 화해를 통한 해결을 찾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법률적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도 이를 꺼려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피해가 실제로 법원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과의 화해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아무리 법적 조치를 취한다해도 인터넷 공간이 광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게시판에 다시 글이 올라오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상대방과 만나 더 이상 문제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방식이 분명한 해결책이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조치 대신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는 이용자들은 상대방이나 가해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 기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한 당사자를 위한 제3자의 중재, 또는 조정절차 마련과 같은 실제적인 피해구제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용윤리교육의 처리 및 그의 한계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량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이용윤리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티즌 10계명을 제정하여 선포한 네티즌 윤리강령을 들수 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 이와 동시에 개정된 제7차교육과정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습관화하자는 취지하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학교교육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8). 교사들은

교사연수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이 온라인상에서 불량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배운다(충북교육청, 2002 & 충남교육청, 2002).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단체, 청소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해마다 ‘이용자 윤리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여성의 전화, 2002 & YWCA, 2001).

이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량행위에 대해서는 외부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온라인 불량행위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치 않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들이 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온라인불량행위를 현실생활에서 개인들이 무의미하게 뱉어버리는 말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사이버공간은 대상이 존재하는 현실공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개입은 정체감 형성을 저해한다고 보았다(황상민, 1997).

이용윤리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할 이론적 배경이 일관적인 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안상수(2002)는 이용윤리교육은 그 개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난 문제와 현실공간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 윤리의 개념과 사이버윤리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인터넷 게임중독이 현실 공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대인관계를 해친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현실공간의 규범으로서의 정보통신 윤리의 영역에 속한다고 한다. 반면, 사이버윤리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의 내재적 규칙이나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보여주는 일탈적 행동이 문제가 될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이버성폭력과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성폭력

이다.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임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유지되는 규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즉 상대방의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무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면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성폭력은 피해 발생지가 오프라인 상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이용윤리교육은 컴퓨터 기술과 아동의 심리적 기제가 맞물려 발생하는 불량행위에 대해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로, 화상대화방과 같은 장소에서 상대방과 건전한 이성교제를 가장한 채 상대방을 유혹한다. 불량행위자들이 상대방의 허락 없이 벗은 몸을 저장해 두어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벗은 몸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다. 온라인상의 불량행위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심리적 차원의 연구 없이 제공되는 이용윤리교육은 이용자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사안은 사이버범죄 통계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데 10대 이용자들이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사이버범죄 백서, 2001). 이는 10대 이용자들을 위한 온라인 이용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윤리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기술규제를 통한 처리 및 그의 한계

이용자들의 불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내용선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특정 단어들이 온라인 상에서 필터링 되도록 하고 있다. 기술규제가 강화된 배경은 음란물 사업에 기인한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가장 발전한 산업이 포르노그래피 사업이다.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30% 정도를 차지하는 사례가 음란물전시인데 거의 대부분 포르노그래피를 담고 있는 신고다. 포르노 그래피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는 여성의 성 상품화 및 대상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포르노그래피 콘텐츠는 현실공간에서 사라져가는 남녀 불평등의 개념을 콘텐츠 내에 담고 있다. 이는 현실생활에서 사라져가는 성차별의 개념이 온라인상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김은경, 2000). 이러한 음란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가 기술규제다. 음란 사이트 차단 목록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해 정보 접속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필터링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규제는 온라인상에서 불량행위를 부추기는 용어의 사용을 억제하는 기능인데 미성숙한 이용자들이 번색(번개섹스)이나 컴섹(컴퓨터 섹스)과 같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다.

기술규제정책은 기술 발달의 위력에 눌려 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음란 사이트를 안내하는 100여개의 팝업창이나 인스턴트 메시징을 통하여 들어오는 성적인 대화 요청 등이 있다. 또한 특정 단어를 금칙어로 규정하여 자동차단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 놓아 미성숙한 이용자들이 불량행위자들과의 접속을 금하자 새롭게 변형된 단어로 미성숙한 이용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 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가 해외에서도 발표되고 있다(American Family Foundation, 2002 & ABA, 2001). 호주 방송청에서 실시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음란 사이트 차단정도와 건전한 정보사이트 차단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차단 선별 장치를 세 등급

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최소 필터링방식으로는 87%의 음란 사이트가 차단된 반면, 14%의 건전 사이트가 차단되었고, 최다필터링 방식으로는 91%의 음란 사이트가 차단되었으나 건전 사이트 접속 불량은 24%에 달하였다. 미국 가족재단에서 행해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술규제가 유해한 사이트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사이트까지 차단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 두 연구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는, 음란 사이트 차단을 위해 만들어진 여과 프로그램이 유익한 사이트 접속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해사이트 차단을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유익한 사이트의 차단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음란 사이트와 같은 성인 사이트 운영자들은 차단 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유사 사이트로 이름을 변경하며 사이트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실제적인 차단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유해한 정보 접속을 막는 대안으로 기술적 규제보다 이용자 힘기르기(user empowerment)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제안하였다.

IV. 향후 대책

온라인 불량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교육의 현실화, 온라인 콘텐츠의 윤리의식 강화와, 사이버공동체의 자각의식 함양을 들 수 있다.

학교 교육의 현실화

학교 교육은 이용윤리교육의 개념을 보다 분

명히 하는 사이버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Lewandowski(2002)는 사이버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면 기존의 도덕이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세 명의 도덕 발달 이론가(Piaget, Gilligan과 Kohlberg)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보이는 특성과 대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피아제의 발달이론이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행동 내역을 통제하는데 적용되기에는 너무 모호하고 조직적이지 못하다. 길리간의 도덕이론은 학령기 아동에게 적용하기 너무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의 반작용이 심하다. 반면, 콜버그의 도덕이론은 성별에 입각하여 만들어져 있지만 상당히 조직적이어서 학령기 아동의 교육과정 개발에 적합하다.

그녀는 사이버윤리 지도 전략에 콜버그의 도덕이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이 지도 전략이 정규 교육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현실생활에서 주요한 역할 모델로서 활동하는 교사나 행정가들이 온라인 환경에 능숙한 아동으로 부터 온라인상에서 요구되는 윤리기준이나 규범을 대리로 배워 온라인 이용시 활용할 수 있어서 온라인 불량행위 방지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사이버윤리가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유럽국가들은 UN 차원에서 컴퓨터 윤리를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인터넷은 그 자체가 국제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매체이므로 윤리적 대응의 측면에서도 국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다(Johnson & Acquah-Gaisie, 1999).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이버윤리의 개념이 한 국가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는 그 효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만국공통적인 사이버윤리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

으로 다가올 현실을 추측해 볼 때 사이버윤리교육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비영어권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가 영어권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고 있다. 한 국가의 이용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대화방에서 만나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터넷 이용자가 자동번역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 안에 설치해 놓으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타국가의 이용자와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만남을 온라인 상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가질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은 단순히 정보검색의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그 한 예로 ‘정보변별행동’의 강화다. 온라인이용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이용자와 접촉을 하여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정보변별행동은 이용자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다. 정보변별 행동을 배운 이용자들은 상대방의 불량행위에 불필요한 대응을 하여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불량행위에 동조하여 이들을 실생활에서 만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된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불량행위 인지 고의로 행하는 불량행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이용으로 자신의 삶에 기여하는 방식의 인지·정서·행동을 배우게 되도록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정보변별행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은 정보통신윤리의 개념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윤리 교육 안내서는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온라

인이용자들이 손쉽게 가이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컴퓨터 기술에 능숙하지 않은 부모나 교사들에게는 가치 있는 안내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니면 특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부모나 교사들이 접속하기만 자동적으로 그리고 의례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즉 오프라인 상의 전화번호부처럼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접속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 콘텐츠 윤리의식 강화

온라인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주관적 관점에 따라 이해한다(제이콥슨, 1999). 제이콥슨은 사이버공간에 있는 이용자가 상대방을 어떻게 그리는가하는 연구에서 온라인상의 이미지가 오프라인 현실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온라인 상에 접속한 이용자는 온라인상의 상대방을 인식하는데 사용하는 단서로 오프라인상의 가치와 기준이다. 온라인 상에서 수개월 동안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 후 오프라인 상에서 만났을 때조차 상대방의 이미지가 미스매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온라인상의 불량행위를 이해하고 처리하고자 할때 이용자들의 오프라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이 쉽게 불량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온라인이용자들은 쉽게 대응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온라인이용자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정보제공자로서 활동할 기회가 많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이 온라인불량행위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인성 개발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터클(1996)은 많은 사람들

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온라인 성별바꾸기를 시도한다고 하였다. 성별바꾸기는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각자의 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에 맞는 역할을 구성해 가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바꾸어 보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여성 피해자, 남성가해자의 구도가 아닌 새로운 틀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이버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음이다.

온라인 콘텐츠내에 윤리의식을 심어주려면 콘텐츠운영자들의 책임감 준수가 요구된다. 콘텐츠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능력있는 어른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들의 참여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가능한 불량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온라인 도박의 경우, 3세 아동들이 즐기는 내기게임에서 도박의 시초가 되는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연구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www.idl.co.za, 2002). 홍콩대학에서 600명의 축구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간에 벌어지는 축구게임이 실제로 도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조사에서 3세까지 내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컴퓨터 이용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볼 때 컴퓨터 내의 윤리의식 확산임이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과제다.

유럽국가들은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권장하고 있다. EC의 책임하에 독일의 한 연구재단에서 만들어진 사업자 행동강령은 일종의 법률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데 유럽내 사업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업자들의 정화에 대한 책임감 없이는 불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온라인불량행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콘텐츠로 아동의 부적절한 인지, 정서를 자극하는 콘텐츠들이다. 대표적으로 포르노그래피가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제공되는 포르노그래피는 현실 사회의 남성지배적 문화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오히려 현실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사이버공간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최은정, 2000). 포르노그래피의 확산을 저지하는 유일한 수단은 여성 참여와 접근을 체계적 런망땀막 유도하여야 하고 기술적 및 콘텐츠 구성상에서 여성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전문가들의 적극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게임사이트의 경우,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성인사이트와 연동되어있다. 아동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게임을 하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성인사이트에 노출이 되는 것이다. 아니면 아동이 게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려고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성인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개되어 아동은 무차별적으로 스팸을 받게 되기도 한다. 여성들의 모니터링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불량행위를 단속하는데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커뮤니티의 자각의식 함양

인터넷공간상에서 벌어지는 불량·불법행위는 다양해지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온라인 불량행위는 문자나 영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리적 손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처리로 일관하기 쉬우나 이는 인터넷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특히 자아정체감 형성이 발달단계에 놓여있는, 10대 청소년이 용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온라인불량행위를 대응하는 기관으로 통신사 고객센터의 소극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통신사 소속 고객센터에서는 온라인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불편·불만 사항을 신고·접수받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약관은 가입자의 피해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용약관에는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가입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불만처리에 관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배상책임 규정 등 통신을 통한 피해의 방지 및 피해배상에 필요한 책임 있는 자세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정보제공자(IP, internet provider)가 가입하고 있고 인터넷정보제공자들은 어떻게든 가입자수를 늘리는데만 진력하고 있어 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관리에 매우 허술한 편이며, 온라인 불량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다를 바 없다.

실제적인 대안으로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정화 의식을 주장하기도 한다 (GIPI, 2001). 진보적인 인터넷 단체들에 의해 행해진 워크샵에서 참여자들은 기술발달이 법률 적용이나 윤리발달을 앞서가기 때문에 규제는 무의미하며 결국 이용자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기술을 갖추는 길만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용자윤리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용윤리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전한 사이버커뮤니티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성숙한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이버공간을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어떤 법규가 필요한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현행법의 연장 확장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는 변호사는 법률 제정 및 시행에 걸리는 시간은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안 마련

에 주력하기 보다 기존의 법률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리커트, 2002).

다만, 사이버성폭력의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및 「성폭력특별법」의 활용으로 가해자나 가해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이용자, 특히, 나이 어린 이용자는 온라인공간상에서 인정되는 행위와 인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법률적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인터넷 이용을 활발히 하는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져야 할 규칙이나 규범의 내역을 자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률 적용은 사이트 운영자들의 관리 책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개설과 동시에 사이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신고 사례를 검토해 보면 많은 사이트운영자들이 사이트 개설에만 신경을 쓸 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들의 피해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최근 캠걸사이트(미성년자들이 캠코더로 자신을 찍은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운영하는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는 운영자 대다수가 10대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조교제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강조는 필수적이다.

이에 반해 불량 이용자들에게 내려지는 심의 조치는 소수 피해자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듯이 보인다. 심의를 통하여 내려지는 개개의 규제정책이 전체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처리 방식인 심의조치 기능은 소수 피해자를 위한 소극적인 조치일 뿐 전체 이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정책은 전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포괄적인

방식을 내포하여야 한다. 결국 규제정책이 담고 있는 규제 방식은 이용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유해/불법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처리 방법으로 국내외적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남의 사생활을 공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불법 행위가 국내 사이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불량사업자들이나 불량 이용자들은 이러한 틈새를 악용하여 불법행위를 쉽게 저지를 뿐 아니라 처리 요청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해외 기관들과의 협동체계 구축으로 사이버 불량행위를 근절하는 것 뿐 아니라 예방차원의 활동도 극대화할 수 있다.

사이버커뮤니티 조성의 체계화 일환으로 온라인 시민 운동의 확산이 있다. 아동과 같은 미성년자들이 사이버성폭력의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서 명명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부는 온라인이용자들이 온라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온라인 시민은 사이버공간에 내재하는 불법·불량행위를 자발적으로 근절하고 유익한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시민 운동은 전국민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온라인 청소의 날을 제정하여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 시민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여 건전한 온라인 시민 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온라인공간의 가치인 다양성과 익명성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시키고 이를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하게 하여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

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경우, 유해 사이트나 성폭력과 관련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 아동은 주변 학생들에게 이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토론 기회를 온라인 상에서나 오프라인 상에서 갖는 것이다. 온라인불량행위는 단순히 온라인상의 불량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에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온라인이 사용자들이 사이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스스로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가질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팸(cyber family의 약자임)과 같은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불량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이버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대안으로 온라인공간에서 건전한 가족의 모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하에 개설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가 사회적 병폐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이버팸의 회원이 된 청소년들이 다른 회원들과 오프라인에서 같이 지내기 위해 가출을 시도하고 또 그들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나 원조교제에 가담하기도 한다. 콘텐츠 개발 사업자들은 개설한 사이트가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V. 논의 및 결론

윌리엄 김슨(1988)은 이미 15여 년 전 인터넷 패러다임에서는 공간, 지위, 법률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시간, 돈, 재능을 더 많이 낭비하기 전에 아동들에게 사이버공간

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인터넷이 우리가 지금껏 접해 왔던 매체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적이다. 온라인 불량행위의 개념이 더 이상 생소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온라인 불량행위는 단순 폭력부터 심각한 범죄행위까지 포함한다. 이는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온라인불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컴퓨터 접속을 시작하는 초기단계부터 이용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변별기술과 같은 기술을 획득하여 이성과의 관계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진정한 이성교제 방식을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호기심 만족의 성적 흥분을 제공하는 곳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책입안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온라인 불량행위는 특정 소수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2천 5백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 전체가 인지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을 가장 활발히 하는 10대 이용자들을 위해 그러하다. 성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놓여있는 그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대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지켜져야 할 규범과 규칙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공간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로 분류된다. 정보제공자들이 정보제공에 대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사이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규제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콘텐츠 제공자들은 인터넷상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은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온라인 불량행위를 일으키는 장소, 대화방이나 음란사이트의 정확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불량행위를 유도하는 장소에 대한 관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 가출 조장사이트가 100여개에 달하고 있고, 살인청부 사이트 회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사이버공간을 더 이상 10대 이용자들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참 고 문 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식지 (2001). 불건전정보신고센터 하반기 통계 자료.
- 김은경 (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젠더, 그리고 정체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 1차 워크샵.
- 이경화 (2000).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그 대응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 1차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 이경화 (2002). Cyber Sexual Violence and Gender's role, *Asian Woman*. 14.
- 안상수 (2002). 정보통신윤리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4월호 소식지.
- 최은정 (2000). 온라인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http://cyberculture.re.kr/forum/paper/cyfemi.htm>
- 한겨레 신문. 2002년 1월 16일
- 동아일보. 2002년 2월 7일
- 충북교육청 (200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특별연수.
- 충남교육청 (2002).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교원특별연수.
- YWCA. 2001.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지킴이. Content controls, Freedom of Expression and ISP liability on the Internet(2001): Advanced Network Workshop. <http://gipiproject.org.html>
- Jacobson D. (1999). "Impression formation in cyberspace: online expectations and offline experiences in text-based virtual communitie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5(1),
- Johnston S.W. & Acquah-Gaisie (1999). Computers and Human Rights: toward a UN code of computer ethics, Australian Institute of Computer Ethics conference.
- Lewandowski J. (2002). Using moral development theory to teach K-12 cyber ethics, SITE conference
- Spinello Richard A., Tavanis Herman T. (red.) (2001). Readings in CyberEthics. Jones and Bartlett Publishing.
- Turkle S. (1996).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London: Weidenfeld & Nicolson.
- <http://www.netice.com/Advice/law/cybercrime/cyberstalking>
- <http://www.cyberangers.org>
- <http://www.fbi.org>

Understanding of online misdemeanor: processing and suggestions

Kyunghwa Lee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what online misdemeanors are and prepare adequate suggestions. In order to do this end, cases which were received at 'Cyber Sexual Violence Report Center' were analyzed. As a consequence of analysis of 1,463 cases, online misdemeanors are conceptualized. There are four patterns in terms of contents: online harassment, displaying porn, cyber defamation and cyberstalking. The range of misdemeanors is from simple abusiveness to criminal acts. Online misdemeanors have been taken measurement by review function, ethical instruction and technology regulation. These processes showed limitations when run into manipulation of technology. Users who are moderated by their misconducts tend to commit another type of misdemeanors instead of stopping them. It requires refined services to control online misdemeanors. Three suggestions are recommended: realization of school learning, reinforcement of online contents' ethical value, cultivation of cyber community's awareness.

Keywords: online misdemeanors, review, technology regulation, users' ethics